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제2조관련)

1. 소방시설설계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항목 업종별		기 술 인 력	영 업 범 위
전문소방시설설계업		가.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1인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 2인 이상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설계
일반소방시설설계업	기계분야	가.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인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 2인 이상	가. 아파트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제연설비를 제외한다)의 설계 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공장의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다)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다.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전기분야	가.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1인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 2인 이상	가. 아파트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공장의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다.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비 고

1. 위 표의 일반소방시설설계업에 있어서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대상이 되는 소방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기계분야

- (1) 소화기구·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 소화설비·옥외소화전설비·피난기구·상수도소화용수설비·소화수조·저수조·제연설비·연결송수관설비·연결살수설비 및 연소방지설비
- (2)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 다만, 비상전원·동력회로·제어

회로·기계분야 소방시설을 작동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재감지기에 의한 화재감지장치 및 전기신호에 의한 소방시설의 작동장치를 제외한다.

나. 전기분야

(1) 비상경보설비·비상방송설비·누전경보기·자동화재탐지설비·시각경보기·자동화재속보설비·가스누설경보기·통합감시시설·유도등·유도표지·비상조명등·휴대용비상조명등·비상콘센트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2)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 중 가목(2) 단서의 전기시설

2. 일반소방시설설계업의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를 함께 하는 경우 주된 기술인력은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와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자 1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소방시설설계업과 소방시설관리업 또는 소방시설설계업과 소방시설공사업업을 함께 하는 경우 주된 기술인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 갓출 수 있다.

가. 전문소방시설설계업과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 소방기술사 자격과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자 1인 이상

나. 전문소방시설설계업과 전문소방시설공사업업을 함께 하는 경우 :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1인 이상

다. 일반소방시설설계업과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 기계분야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자격과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자 1인 이상

라. 일반소방시설설계업과 일반소방시설공사업업을 함께 하는 경우 :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기계분야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자 1인 이상

4. "보조기술인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다.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할 경력 3년 이상인 자

라.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경력 및 학력을 갖춘 자

5. 위 표 및 제2호에 불구하고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업무신고를 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등록을 한 자가 소방시설설계업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건축사법」 및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인력기준(주된 기술인력에 한한다) 등이 위 표의 등록기준과 중복되는 때에는 위 표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2. 소방시설공사업

항목 업종별		기 술 인 력	자 본 금 (자산평가액)	장 비	영 업 범 위
전 문 소방시설 공사업		가.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소방설비 기사 각 1인(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자 1인)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 2인 이상	가. 법인 : 자본금 1억원 이상 나. 개인 : 자산평가액 2억원 이상	○장비 : 부표의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모든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중복되는 장비는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일 반 소 방 시 설 공 사 업	기계 분야	가.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 기사 1인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 1인 이상	가. 법인 : 자본금 5천만원 이상 나. 개인 :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장비 : 부표의 기계분야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나. 위험물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전기 분야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 기사 1인 이상 ○보조기술인력 : 1인 이상	가. 법인 : 자본금 5천만원 이상 나. 개인 :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장비 : 부표의 전기분야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정비

					나. 위험물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 시설의 공사·개 설·이전·정비
--	--	--	--	--	--

비 고

1. 위 표의 일반소방시설공사업에 있어서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대상이 되는 소방시설의 범위는 소방시설설계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의 비고란 제1호 각목과 같다.
2.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일반소방시설공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주된 기술인력은 소방기술사 1인 또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소방설비기사 1인으로 하고, 장비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소방시설공사업에 중복되는 것은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3. 자본금(자산평가액)은 당해 소방시설공사업의 최근 결산일 현재(새로이 등록한 자는 등록을 위한 기업진단기준일 현재)의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말하고, 소방시설공사업 외의 다른 업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에서 겸업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4. "보조기술인력"이라 함은 소방시설설계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의 비고란 제4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소방시설공사업과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주된 기술인력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갖추 수 있고, 두 업종의 중복되는 장비는 이를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가. 전문소방시설공사업과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 소방시설관리사와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를 함께 취득한 자) 또는 소방기술사를 함께 취득한 자 1인
 - 나. 일반소방시설공사업 기계분야와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와 소방시설관리사를 함께 취득한 자 1인
 - 다. 일반소방시설공사업 전기분야와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 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와 소방시설관리사를 함께 취득한 자 1인
6. "개설"이라 함은 이미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새로이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7. "이전"이라 함은 이미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현재 설치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어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8. "정비"라 함은 이미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고 있는 기계·기구를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것을 말한다.

[부표] <개정 2007.1.24>

장비

기계분야			전기분야		
장비명	규격	수량	장비명	규격	수량
하론농도측정기	0~10%의 풍속을 측정할 수 있는 것	1	전기절연저항시험기	DC 500V(최소눈금이 0.1MΩ 이 하 인 것)	1
이산화탄소 농도 측정기		1			
전류전압측정기		1			
풍속계		1	전류전압측정기		1
			열감지기시험기		2
음량계	DC 500V(최소눈금이 0.1MΩ이하인 것)	1	연기감지기시험기	최 소 눈 금 이 0.1Lux이하인 것	2
차압계		1	조도계		1
방수압력측정기		1			
(방수량측정기를 포함한다)			음량계		1
봉인렌치		1			
전기절연저항시험기		1			
열감지기시험기		1			
연기감지기시험기		1			

비 고

1. 소방시설공사업자는 「계량에 관한 법률」 및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교정검사대상인 장비에 대하여 해당 법률에 따라 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시·도지사는 제1호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자가 교정검사를 받지 않은 때에는 교정검사를 받도록 명해야 한다.
3. 2 이상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3. 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항목 업종별	기술인력	장 비	영업범위
	가. 소방기술사 1인 이상 나.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장비 : 부표 1과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공사 감리

전문 소방 공사 감리업		특급감리원 각 1인(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자 1인. 이하 다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같다) 이상 다.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고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각 1인 이상 라.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중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각 1인 이상 마.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초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각 1인 이상	같다.	
일반 소방 공사 감리업	기계분야	가. 기계분야 특급감리원 1인 이상 나. 기계분야 고급감리원 또는 중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1인 이상 다. 기계분야 초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1인 이상	장비 : 부표 1과 같다.	가. 연면적 3만 제곱미터 (공장의 경우에는 1만 제곱미터)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다)에 설치되는 기계분야소방시설의 감리 나. 아파트에 설치되는 기계분야소방시설(제연설비를 제외한다)의 감리 다.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의 소방시설의 감리
	전기분야	가. 전기분야 특급감리원 1인 이상 나. 전기분야 고급감리원 또는 중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1인 이상 다. 전기분야 초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1인 이상	장비 : 부표 1과 같다.	가. 연면적 3만 제곱미터 (공장의 경우에는 1만 제곱미터)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감리 나. 아파트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감리

				다.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전기분야의 소방시설의 감리
--	--	--	--	---------------------------------

비 고

1. 위 표의 일반소방공사감리업에 있어서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대상이 되는 소방시설 등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기계분야

(1) 소화기구·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 소화설비·옥외소화전설비·피난기구·상수도소화용수설비·소화수조·저수조·제연설비·연결송수관설비·연결살수설비 및 연소방지설비

(2)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 다만, 비상전원·동력회로·제어회로·기계분야의 소방시설을 작동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재감지기에 의한 화재감지장치 및 전기신호에 의한 소방시설의 작동장치를 제외한다.

(3) 실내장식물 및 방염대상물품

나. 전기분야

(1) 비상경보설비·비상방송설비·누전경보기·자동화재탐지설비·시각경보기·자동화재속보설비·가스누설경보기·통합감시시설·유도등·유도표지·비상조명등·휴대용비상조명등·비상콘센트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2)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 중 가목(2) 단서의 전기시설

2. 위 표에서 "특급소방감리원", "고급소방감리원", "중급소방감리원" 및 "초급소방감리원"은 부표 2의 구분에 따른 기술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3. 일반소방공사감리업의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를 함께 하는 경우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를 함께 취득한 감리원 각 1인 이상 또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일반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기준 중 각각의 분야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을 두어야 한다.

4. 위 표 및 제3호에 불구하고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업무 신고를 하거나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감리전문회사등록,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력시설물공사감리업 또는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등록을 한 자가 소방공사감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동법에 따른 기술인력기준(전문소방공사감리업의 소방기술사, 일반소방공사감리업의 특급감리원에 한한다) 또는 장비 등이 위 표의 등록기준에 중복되는 때에는 위 표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5. 기술인력 등록기준에 있어서 기준 등급보다 초과하여 상위등급의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하위등급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표 1]

장 비

전문소방공사감리업			일반소방공사감리업					
			기 계 분 야			전 기 분 야		
장비명	규 격	수 량	장비명	규 격	수 량	장비명	규 격	수 량
수압기	20kgf/cm ²	1	수압기	20kgf/cm ²	1	전류전압		1
하론농도		1	하론농도		1	측정기		
측정기			측정기			음량계		1
이산화탄소		1	이산화탄소		1	초시계		1
농도측정기			농도측정기			전기절연	DC 500V	1
전류전압		1	전류전압		1	저항시험기	(최소눈금이 0.1MΩ 이하인 것)	
측정기			측정기					
검량계	200kgf	1	검량계	200kgf	1			
풍압풍속계	1~10mmHg	1	풍압풍속계	1~10mmHg	1	열감지기		1
	의 기압을 측정할 수 있는것			의 기압을 측정할 수 있는것		시험기		
						연기감지기		1
						시험기		
차압계		1	음량계		1	조도계	최소눈금이 0.1Lux 이하인 것	1
음량계		1	초시계		1			
초시계		1	방수압력		1			
방수압력		1	측정기					
측정기			봉인렌치		1			
봉인렌치		1	포채집기		1			
포채집기		1	방출포량		1			
방출포량		1	시험기					
시험기			전기절연	DC 500V	1			
전기절연	DC 500V	1	저항시험기	(최소눈금이 0.1MΩ 이하인 것)				
저항시험기	(최소눈금이 0.1MΩ 이하인 것)							
열감지기		1	열감지기		1			
시험기			시험기					

연기감지기 시험기 조도계	최소눈금이 0.1Lux 이 하인 것	1 1	연기감지기 시험기		1			
---------------------	---------------------------	--------	--------------	--	---	--	--	--

비 고

1. 감리업자는 계량에관한법률 및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한 교정검사대상인 장비에 대하여 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시·도지사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업자가 교정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교정검사를 받도록 명하여야 한다.
3. 2 이상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장비를 갖춘 것으로 인정한다.

[부표 2] <개정 2007.1.24>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시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인 소방공사감리원의 구분

구 분	기술자격기준
특 급 소 방 감리원	1.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2.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자 3.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자
고 급 소 방 감리원	1.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자 2.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자
중 급 소 방 감리원	1. 소방설비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자 2.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자
초 급 소 방 감리원	1.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소방안전 관련 학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 소방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4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비 고

1. "소방 관련 업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 50퍼센트의 범위에 한하여 경력을 인정한다.

가.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업, 소방공사감리업, 소방시설관리업, 위험물 안전관리업무대행기관·한국소방안전협회·한국소방검정공사·한국화재보험협회·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자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서 수행하는 소방시설의 설계·시공·감리 또는 소방시설의 점검 및 유지관리업무와 방화관리자의 방화관리업무

나.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 후 소방관서에서 건축허가동의·소방검사·소방시설등완비증명발급·「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4호에 따른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

다. 소방기술사·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설업체·전기공사업체·기계설비공사업체에서 근무 기간 중 수행한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또는 소방시설의 점검 및 유지관리업무

2. "소방 관련 학과"라 함은 소방과 관련된 학과 중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3. 소방감리원의 경력·학력인정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른다.

가. 2가지 이상의 경력이 같은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가운데 1가지만 인정하고, 중복되지 않는 기간의 경력은 각 경력기간을 해당 인정하는 경력 기준 기간으로 나누어 합산한 수치가 1 이상이면 해당 등급을 적용한다.

나. 소방기술사,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자 또는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졸업한 자가 기계·전기분야를 모두 등록한 소방시설설계·공사·감리·소방시설관리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를 모두 인정한다.

다.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방화관리자로 선임되어 그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기술인력 등급만 인정한다. 다만, 소방기술사,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소방

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자가 방화관리자로 선임되어 그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근무경력을 모두 인정한다.

4.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에 속하는 학과·학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